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82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임기제공무원(산업안전보건분야 안전관리자) 채용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예방실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

□ 채용개요

분 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주요직무
산업안전 보건분야 안전 관리자	일반임기제 7급	1명	2027. 1. 1. ~ 2028. 2. 29. (주40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중대재해(안전분야) 업무** ○ **기타 강남구의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 근무조건

○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상기 표 참조

※ 근무성과에 따라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계약 연장 가능

○ (근무장소) 강남구 중대재해예방실 사무실

○ (보수수준)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7급	70,782	50,272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1078호, 2026.3.20.)

○ 2026년 임기제공무원 인사 관리 계획(총무과-1581호, 2026.1.2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응시요건

○ 공통 응시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성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직무분야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구 분	응시요건
자격 요건	①「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⑥「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산업안전 관련 학과: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별표2] 안전관리 분야 해당 학과(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안전관리과 등)
경력 요건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단, 공무원 경력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자 선임근무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하는 안전관리자 선임확인서 제출 또는 경력·재직 증명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격요건 기준일 : 서류접수 마감일(2026. 11. 16.), 경력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응시일정 및 방법

Ⅰ.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1. 12.(목) 09:00 ~ 11. 16.(월) 18:00

· 토요일 및 일요일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강남구청 본관 1층 중대재해예방실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발송 전 담당자(02-3423-5016)에게 사전 유선 연락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람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 주소 :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1층(삼성동)
강남구청 중대재해예방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채용담당자 앞
※ 봉투 겉면 작성은 응시원서 양식 중 <별지9호> 참조

○ (응시수수료) 7,000원

- 납부방법 : 방문접수 시 응시원서에 7,000원 상당 강남구 수입증지 부착, 우편접수 시 7,000원 상당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Ⅱ. 전형별 일정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2차)		면접시험(2차)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6. 11. 30.(월)	2026. 12. 9.(수), 14:00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안내	2026. 12. 14.(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기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및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내 공고 게시

Ⅲ. 서류전형(1차)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 (평가대상)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평가내용)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결과발표) 개별 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내 공고

Ⅳ. 면접시험(2차) : 개별통보

○ (평가대상) 서류전형(1차) 합격자

○ (평가내용)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방법) 면접위원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순으로 결정

○ (결과발표) 개별 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내 공고

※ 면접시험(2차) 합격자는 채용 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국민권익위 권고(의안번호 제2023-225호)에 따라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본인의 종합 평균점수 및 평가요소별 평균점수 공개(단, 평가요소별 또는 면접위원별 개별 점수는 비공개)

Ⅴ.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방법) 개별 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내 공고

※ 최종합격자 외 1명의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여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추가합격자 채용할 수 있음(단, 추가합격 대상자는 강남구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거쳐야 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강남구수입증지 (강남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구입 후 부착)

- (일반임기제7급) 7,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별지2호, 3호, 4호 서식) 각 1부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여야 함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경력(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비동의자(별지7호 서식 미제출자)에 한함

※ 남자인 경우 병적사항 기록분 포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발행기관 양식상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발급담당자 자필확인 필수)

※ 재직기간, 주당근무시간, 소속,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발행기관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발행기관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담당자 자필확인 및 날인 또는 서명 필수)
- 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로 보완하고, 그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홈텍스 및 관할세무서 발급)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재직)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 필수)을 첨부하여야 함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관련 증빙자료(관련분야 자격증, 관련학과 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 및 경력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응시 자격 및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제출서류는 본인이 원할 시 반환하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수수료 반환은 과오납, 응시의사 철회 등의 경우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제2항에 따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내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중대재해예방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02-3423-5016)로 문의